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8.26.)

일 반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 봉 기]

목 차

-
- 1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01

 -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4 1

 - 4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02

 - 5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52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2. 제안이유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
- 추후 인근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 황
 - 시 설 명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대동로타리 인근)
 - 주요시설 : 공영주차장(1,946㎡/50면), 화장실, 주차관제시스템
- 나. 위탁사무
 - 시설 : 공영주차장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등
 - 운영 : 주차안내 및 지도, 주차요금 징수, 화장실 등

다.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2. 10. ~ 2023. 11. 22. / 1년 1개월간
※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 기간과 일치 후 재위탁 추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 위탁시설 : 공영주차장(1,946㎡/50면), 화장실, 주차관제시스템 등

4. 참고사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 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삭제(2016.12.28.)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2. 제안이유

- 지정 게시대의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선 수리, 태풍 등 풍수해 시 신속한 예방조치,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신고 유도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시 신고 접수대행
- 나. 위탁업무
 - 현수막 게시 신고서 접수 및 검인 날인, 수수료 접수
 - 현수막 설치·철거 대행
 - 게시대의 경미한 보수 및 유지관리
 -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장비·인력 지원

다. 위탁기간: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광고물 관련업체의 전문성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
- 게시대 파손 및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능
- 게시대 관리업무 부담 해소

나.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과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2. 제안이유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함
- 재협약을 통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여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천적 교육 및 지역 과학 문화 확충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현황
 -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위 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거창사과테마파크 내
 - 규 모 : 2,833㎡
 - 천적생태과학관 : 1,040㎡(지하 1층, 지상 3층)
 - 천적생산 온실(비닐온실 6동 1,530㎡), 곤충체험 온실(유리온실 1동 263㎡)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 현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위 탁 금 : 200,000천원(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미포함)
- 수탁기관 :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관장 1명, 직원 3명)
- 위탁사무 : 시설운영, 전시운영, 천적 생산
- 방문객 현황 ※ 2011년 개관 이래 누적 180천명 방문·체험

구 분	계	2020	2021	2022(7월기준)	비 고
방문인원(명)	18,816	6,686	8,496	3,634	코로나로 방문객 감소

- 천적공급 현황 ※ 2013년 공급 이래 1,400농가, 60,000명 공급

4. 참고사항

가. 재협약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 7.
 - 심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재협약 적정성, 재산정운영비 적정성
 - 심의위원 : 6명(공무원 1명, 관련전문가 5명) 중 4명 참석
 - 심의결과
 - 업무성과평가 : 총 1,000점 만점 중 876.5점
 - 재협약적정성 : 총 100점 만점 89.8점, 원안가결
 - 재산정위탁금 : 금225,332천원, 원안가결

나. 관련법규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나, 동일 단체에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탁 계약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으로 운영기간을 상시에서 특정요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2. 제안이유

-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8
- 다. 주요시설 : 판매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712.5m²
- 라. 위탁대상 사무범위
 - 위탁시설 관리 운영,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마. 위탁기간 : 2022. 12. 24. ~ 2025. 12. 23.(3년간)

바. 선정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푸드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참고사항

-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탁 대상 시설이 거창읍 거함대로 3372-8으로만 되어 있어, 최근 오픈한 2호점의 경우 신규 위탁 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2. 제안이유

-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조달 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조달 대행기관을 신규 선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운영 개요
 - 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30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017㎡ / 건축면적 1,119㎡
 - (1층) 입하장, 공산품보관실, 예냉실, 소분실, 출하대기실, 출하장 등
 - (2층)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
 - 사업내용
 - 식자재 조달 대행(품목, 업체 결정 등)

- 학교별 식자재 매칭작업 및 클레임 관리,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확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매월 운영실적 결과보고 등
 - 예산지원 : 없음, 식자재 조달수수료(10~15%)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 나. 위탁기간 및 선정기준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선정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